

문화재청에 문화재관람료 인상 승인 권한 부여

“문화재보호법개정안 개악”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불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2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교계와 정부가 논의를 지속해 온 사안이었는데도, 국회에서 전격 개악안이 통과되자 불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조계종은 22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같은 날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변안동의’를 가결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가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람료 징수에 대해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문화재청으로 넘어간 셈이다. 앞으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을 늘이거나 관람료를 인상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기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문

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이 이를 어기고 관람료를 징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발의에서 통과까지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07년 3월 22일 지병문 의원(통합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같은 해 11월 19일 제269회 국회는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정래 의원(2006년 11월 20일), 손봉숙 의원(2006년 12월 20일, 2007년 2월 9일)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후 통합 · 조계종을 도출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11월 20일 제10차 문화관광위원회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12월 26일 제270회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 대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당시 상정된 대안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반대 입장이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안은 2월 19일 법사위에서 의결돼 같은 날 오후 제271회 본회의에서 전격 가결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병문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면 문화재관람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찰들이 사찰과 멀리 떨어진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대표소 이전 및 관람료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계종은 물론 개정안을 검토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은 “문화재 보조금과 문화재관람료는 불교에 대한 이종지원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독립적 법집행”이라며 “개정안은 1995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는 “개정안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직제상의 문제 및 업무효율성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역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문화재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려면 유급

또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통제 · 관리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의욕과 자율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법안 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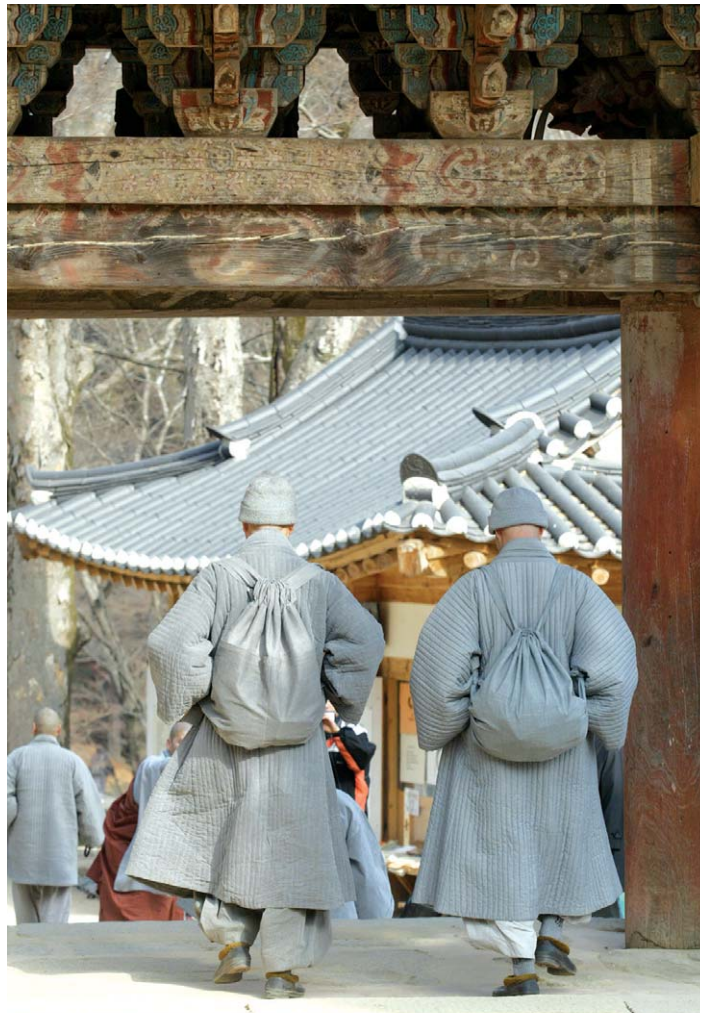
향후 불교계 대응은?

법안 통과 직후인 2월 22일 조계종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산문폐쇄 등 모든 법적, 물리적 행동을 통해 법률안을 백지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즉속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문화관광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 ▲문화관광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강경 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같은 날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변안동의’를 가결하고 법안 폐기절차를 밟았다. 변안(變案동의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을 반복 ·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안 가결 전후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절차다.

국회 문광위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변안동의를 통과시킴에 따라 변안동의안은 2월 25-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변안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변안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항의 집회나 산문폐쇄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청와대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월 26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를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후 18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된 법률에 대한 또 다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2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단 차원에서 법률안 통과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불교계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개정 법률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걸망 지고 또 다른 수행 속으로”
정해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1일, 전국 사찰에서 해제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조계종립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도 안거에 들었던 수행남자들이 산문(山門)을 나섰다. 정해년 동안거 기간 동안 전국 선원에서 23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안거 정진했다. **순천 송광사 · 박재원 기자**

문화재청·문광부 반대에도 법안 통과 조계종 ‘산문폐쇄’ 등 강경 대응 방침 문광위 ‘변안동의’ 가결 사태 진화 나서

(개정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화재 관람료 관련 조항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관행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4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관람료 징수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허당의 세상만사

■ 고독한 비명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때도 있지요. 내가 나를 유쾌시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때도 있지요. 깊은 산 외로운 섬. 산짐승도 외로워 홀로 울면 가끔은 나도 눈물이나요. 내가 나를 가두긴 했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리울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내가 그리울때, 더 깊고 먼 곳으로 도망가지요.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업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관동로 1597 한일빌딩 206호(한성역 5분 도보)

전화 | 031)387-5400 | 팩스 |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원화 변호사)
017-535-0685 (장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서암 종정 복권과 승려분한 회복 촉구성명

한국불교사와 조계종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과오를 든다면 그것은 90년대 종단사태와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을 불신임 결의를 한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훼손과 함께 인적청산이란 목표 아래 원로 종진 승려들까지 결석신판으로 치달린 위험입니다.

이에 우남(愚罔)은 사건 발생 이래 제도권의 사면추진을 지켜보아 온지 13년여, 서암 종정 열반 5주기를 1개월을 앞두고 감히 종단에 서암 종정의 복권과 치달린 승려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사부중의 이해와 출가중의 동침으로 화합포살(和合布薩)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함을 밝혀둡니다.

1. 94년 4월 5일, 4월 10일 김해원 원로회의의 부의장이 당시 의장직을 겸하고 있던 서암 종정의 재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하지 않고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원로회의의 소집에 관한 중헌 제27조 ②항과 제33조의 위법입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소집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서암 종정의 여법한 교시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없습니다.

2. 서암 종정의 4월 9일자 승려대회 금지교시는 중종의 승계(중헌 제19조)로서 종단 정사 해결의 기본법(중헌 제9조 ①항 具足戒 · 七滅淨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법했습니다. 따라서 동 교시를 문제삼아 4월 10일 비법법중(非法別衆)의 승려대회에서 임석하고 있지 않는 중정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비법이자 별종의 결의로 무효입니다.

3. 위 원로회의의 2차례 결의에 의해 개최된 4월 10일자 승려대회(이하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그 결의 그리고 승려대회에 참가한 대중의 총무원 청사 점령은 앞서 언급한 본 조계종 중헌상의 본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중헌 제9조 1항 구주계 · 칠멸쟁법)의 위반이자 당시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2,4,7,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4. 본인은 당시 종정 사서실장으로 제도권에 서암 종정의 복권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서암 종정의 복권은 4·10 원로회의에서 불신임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 4·10 승려대회에 참석한 대중으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유도한 사회자와 대회장의 망어를 대신하는 참회이자 94년 종단사태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비법멸종의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한 개혁회의 호법부와 호계위원회는 피징계자들에게 대한 문책, 진술, 자백 등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법에 근거해 결석신판으로 원로 종진승려를 치달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헌상의 칠멸쟁법과 율장의 모든 징벌규마규범에도 반합니다.

이상과 같은 촉구성명에 대한 제도권의 태도를 지켜 본 다음 관계자들과 협의 후에 현행 승려법 제46조 3항, 동 제54조 3항 등 조계종의 정체성 문제까지 포함해 보다 상세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정예하를 비롯한 관련 종단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확실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산 원로의장을 비롯해 사면을 간곡히 권고해 온 원로회의와 사면에 동의해주신 종회의원스님들 그리고 사면추진과 신문지상을 통해 사면을 주장해주신 출가중과 재가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2. 18

園頭 舍掌 (당시 서암 종정 사서실장 겸 원로회의의 사무처장)